

민 원 조 사 발 의 의 건

의 안 번 호	54
--------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1999. 5. 18.
발 의 자 : 시종덕의원외8인

1. 조사의 목적

21세기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국·시비 및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립독서실 및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 전반적인 운영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부적절한 부분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시정토록 함과 동시에 투명한 운영공개로 민원을 해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.

2. 조사할 사안의 범위

- 구립독서실 종사자 및 예산의 적정성 여부
-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 및 운영, 예산집행의 적정성

3.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

- 민원조사특별위원회

민원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의 안 번 호	55
--------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1999. 5. 18.
발 의 자 : 시종덕의원외8인

1. 주 문

-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영등포구구립어린이집·독서실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제안이유

- 영등포구구립어린이집·독서실 운영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조사하여 부적절한 부분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관계부서로 하여금 시정토록하고 투명한 운영공개로 민원을 해소하여 영등포구정의 신뢰회복과 구민의 민원 및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지방자치법 제36조
- 나.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